인권동화 잘 읽기 ● 이용교 |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엄마, 엄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동화 잘 읽기 ● 아동인권 ●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엄마, 엄마"

국가인권위원회

차 례

1.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2. 요보호 아동의 인권실태

3. 인권동화 들여다보기

4. 아동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5.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6. 함께 이야기해 봐요

7. 참고하세요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평범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비롯된다.

18세기 후반에 시민의 인권이 확인되고 선언되었지만, 아동을 시민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루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사회가 아동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고 무시하며 교육을 형식적으로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아동도 고유한 가치와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되면서 이 선언은 국제적 문서가 되었다. 이 선언에는 전문과 5개조의 본문이 있는데, 그 전문에서 "모

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했다.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선언'은 전문과 10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언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 파악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랜 논쟁을 거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 발효된 1976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정하였다. 국제 아동의 해는 아동의 인권 실현을 촉진하려고 결정하였고, 아동 권리협약의 채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그 심의과정에서 '아동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 파악하는 아동관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아동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 단적인 예가 아동의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과 매스미디어에 대한 아동의 접근에 관한 조항이다. 이 협약을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채택하였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1924년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1948년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1959년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선언
1979년	국제연합	국제 아동의 해
1989년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1990년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법으로 발효

한편,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1990년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다. 우리 정부는 비준과정에서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 입양허가, 상속권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갖는다(헌법 제6조).

아동권리의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 권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는 협약의 실체인 아동의 권리 조항(제1조~제41조), 제2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 관계규정(제42조~제45조), 제3부는 협약가입 절차와 협약 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제54조)이다. 그 중 제1부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아동을 보호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인 보장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21조) 등 가정환경보호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보장권(24조),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18조) 등 제반 아동복지 보장

의무교육(28조), 여가와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과 형사 피의자(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 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 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요보호아동의 인권 실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

요보호아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고, 대표적으로 기아, 사생아, 미아, 가출부랑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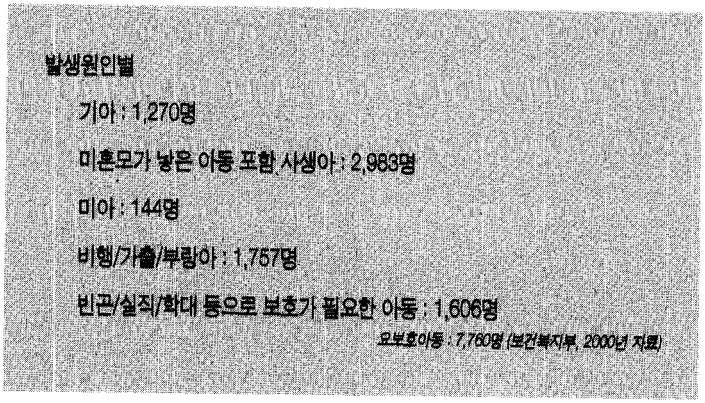

정부가 파악한 요보호아동은 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 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가출아동, 문제행동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 등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정부가 밝힌 통계는 요보호아동의 아주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밝힌 요보호아동의 특징

국가의 긴급한 보호 · 개입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해마다 8천여 명씩 발생

1999년: 7,693명
2000년: 7,760명
2001년: 12,086명 발생

(2001년도에 요보호아동이 급증한 것은 통계방식을 바꾸어서이다)

요보호아동의 주요인이 미혼모가 출산한 사생아, 그 다음은
기아와 비행/가출/부랑아

1999년에는 사생아가 전체의 39.8%를 차지
2000년에는 38.4%,
2001년에는 40.5%이었다.

(청소년의 성경험이 늘어나므로 사생아는 더욱 늘 것이다)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요보호아동이 더 늘고 있다.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빈곤과 실직 등으로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나면서 요보호아동도 늘어났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범죄로 규정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1999년에 216명이던 미아가 2001년에 98명으로 준 것은 미아찾기의 체계화 때문인 듯하다)

요보호아동의 성별

2000년에는 남자가 전체의 56.9%, 2001년에는 55.1%를 차지

(출생아동은 남자가 많지만 '남아선호사상' 이 줄고 남아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요보호아동의 건강상태: 장애아의 비중

1999년에는 요보호아동의 5.3%,

2000년에 5.7%, 2001년에 5.2%가 장애아

(전체 인구 중 등록장애인이 2.3%이니 요보호아동 중 장애아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2배가 넘는데, 이는 장애아의 양육을 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발생원인별						성별		건강상태별	
	계	기아	사생아 (미혼모 아동등)	미아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남	여	일반	장애
1999	7,693	1,432	3,058	216		2,987	-	-	7,283	410
2000	7,760	1,270	2,983	144	1,757	1,606	4,419	3,341	7,316	444
2001	12,086	717	4,897	98	728	5,646	6,661	5,425	11,459	627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2001년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요보호아동은 18,808명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사는 것은 국가가 요보호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서이므로 그것 자체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가 '양육을 포기' 한 상태여서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어기는 셈이다. 이들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아동양육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체 아동복지시설 273개 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이 238개소이고, 시설아동 중에서 92.7%가 양육시설에서 생활한다. 아동양육시설은 이른바 '고아원' 으로 부르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활한다.

아동당 종사자수가 너무 적다는 사실이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 10명 내외당 생활지도원 1명을 배치한다. 이는 일반 가정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10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1. 12월 기준)
구 분	계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전용시설
시설수	273	238	5	6	13	9	2	1
정 원	27,045	24,628	440	663	411	713	190	-
현 원	18,808	17,437	179	367	252	380	193	-
종사자	3,681	3,245	41	93	27	190	85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갖춘 아동상담소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고,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받으며, 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로부터 교육급여로 받고 있다. 가정의 아동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데 국가가 시설아동의 사교육비를 보조하지는 않아서 격차는 더욱 커진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더하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퇴소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으로 100만원(일부 시도는 300만원)을 주지만 퇴소한 후에 얻어야 할 원룸 전세금(최소한 2천만원)의 1/20밖에 안 된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란

부모의 사망, 수형,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로 20세 이하의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부모의 질병, 장애 등으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가계의 책임을 진 결손, 빈곤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985년에 처음 제도화할 때 6,696세대 13,778명에서 1995년 8,506세대 15,168명으로 늘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미성년자인 '소년소녀'가 '가장'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에 전문가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최근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가 줄어들었다. 소년소녀가장은 복지시설의 아동과 함께 가장 열악하게 사는 아동이라는 점에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말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은 5,248세대 8,060명이다. 성별은 남자가 4,214명으로 여자 3,846명보다 많고, 연령은 15~17세가 3,520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한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부모의 사망이 4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모의 가출이 31.4%, 부모의 이혼이 11.6%, 부모의 장애와 질병이 6.3%, 부모의 복역과 기타가 5.1%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는 이유 중에서 절반 가량이 부모의 사망이지만, 부모의 가출과 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양육을 기피한 사례가 전체의 43.0%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외에도 학용품비, 이미용비 등의 명목으로 월 65만원이 지급된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지만, 아동기에 꼭 필요한 생활지도와 정서지도가 빠져 있어서 이들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성		연 령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계	8,060	4,214	3,846	62	1,251	2,095	3,520	1,132
세대주	5,248	2,768	2,480	10	465	1,085	2,632	1,058
세대원	2,812	1,449	1,366	52	786	1,010	888	74

학대받는 아동

200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2,105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받는 아동의 유형

- 굶기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이 32.0%
- 신체적 학대 22.6%
- 유기 6.4%, 정서적 학대 5.4%, 성 학대 4.1% 등으로 나타났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되는 경우도 29.6%나되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장소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 80%
- 유아교육기관 2.3%
- 집 근처 2.0%
- 이웃집과 친척집 각 1.5%

집에서 학대하고 가해자가 부모라는 것은 학대가 지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받는 아동의 연령

- 9~11세가 23.7%로 가장 많고
- 그 다음은 12~14세로 20.8%
- 6~8세 18.4%, 3~5세 13.5%, 15~17세 12.6%, 2세 이하 10.6% 등 11세 이하가 전체의 66.2%이고, 저항을 거의 못하는 5세 미만의 아동도 전체의 24.1%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53%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고
- 그 다음은 시설보호 33.5%
- 친인척보호 7.0%
- 타기관 의뢰 7.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데, 시설보호를 받거나 타기관에 의뢰된 아동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므로 이전히 위험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200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2,105건뿐이지만, 지난 1년 동안 매를 맞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90%이상이 "있다"고 답하고, 학자들은 전체 아동의 2~3%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추계하는 것을 볼 때 신고된 사례는 아주 일부일 뿐이다.

집을 떠난 가출청소년

경찰에 신고된 가출인 중에서 20세 미만은 연간 2만명이 좀 안 되지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는 약 80%가 가출 충동을 느꼈고, 10%가량은 실제 가출한 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0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 23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

- 집이나 학교가 싫어서 (남자 53.7%, 여자 46.3%)
- 부모나 가족의 폭력 (남 17.4%, 여 15.8%)
- 부모와의 갈등 (남 5.4%, 여 8.4%)
- 일시적 충동 (남 4.7%, 여 9.9%)
- 부모의 이혼 · 재혼 · 가출 때문 (남 4.7%, 여 5.0%)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 유해한 사회환경, 개인적 요소 등 여러 요인이 청소년의 가출에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0명 중 8명은 두 차례 이상 가출한 적이 있고, 한 달 이상 가출한 청소년이 과반수(52.9%)나 된다. 이들의 평균나이는 15살, 첫 가출 시기는 중학교(51%)때가 가장 많았다.

집을 나온 뒤 남녀 모두 '친구나 아는 사람의 자취방' 에서 잠을 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남자는 '피시방이나 만화방, 비디오방' 에서, 여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 집' 에서 잠을 잘 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은 적절한 숙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숙을 하므로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봤으나 '돌아가고 싶다' (13.2%)는 의견보다는 '돌아가지 않겠다' (41.5%)고 대답한 사람이 3배가 넘었다. 이는 응답자의 80%가 재가출한 청소년이며, 가출 이유도 우호적이지 못한 양육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강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동화 들여다보기

아동인권동화 『엄마,엄마』는 모두 19편으로 구성된 연작으로 주인공 최나영이 사는 '콩나물 집' 에서 벌어지는 식구들의 이야기다. 나영이가 사는 '콩나물 집' 은 놀이터 옆 낡은 이층집이고, 엄마, 부엌이모, 그리고 열여덟 명 아동 등 모두 스무 명이 산다.

『엄마,엄마』는 나영이가 어떻게 이 집에 왔고, 식구들과 이웃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세영이를 통해서 '콩나물 집'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보여주고, 억수, 선숙, 소연 등을 통해서 어린 아동이 겪는 부모로부터 유기, 아동학대의 실태와 후유증, 그리고 문제행동을 보여준다.

『엄마,엄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버림받는 아동의 인권실태를 잘 보여준다.

버림받는 아동 중에는 이혼한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한 나영,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가출하여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던 억수, 아버지가 위탁한 세영, 그리고 재혼한 가정에서 학대받은 선숙 등을 통해서 요보호 아동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버림받는 아동의 부모는 나영이 엄마, 억수 할아

버지처럼 한두번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영이 아빠처럼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엄마와 부엌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들은 생활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렇지만 '콩나물 집'의 아이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이웃사람들의 편견과 질시 속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당국조차도 '콩나물 집'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엄마와 부엌이모의 보살핌으로 아이들은 날로 성장하고, 노래하는 수녀님, 컴퓨터와 영어 선생님, 목사님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웃으로부터 아동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아저씨도 나중에는 도울 일이 없는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동인권동화 『엄마, 엄마』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동화이다. 억

수, 세영, 선숙의 사례로 보호자와 상담하여 입소를 하게 하고, 정원 내에서 엄마, 부엌이모 그리고 큰언니가 아이와 함께 자며,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으며 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사진이나 찍으려는 후원자를 단호히 거절하고 자원봉사자가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맺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를 돕는 일이 자칫 동정이나 자선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복지로 연결되길 바라는 것이다.

도벽, 싸움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일명 '도깨비방' 이라고 불리는 '생각방' 에서 근신하도록 하지만, 이웃의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에는 당당히 맞서 싸우는 '깡패 엄마' 의 생활지도 방식이 돋보인다.

끝으로, 나이보다 조숙하고 힘이 세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나영은 작가의 분신인 듯싶다. 나영이가 보물 제1호로 간직한 동화작가의 싸인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개인 이름이 붙은 옷장이 있지만, 그 옷장을 채울 것이 없어서 고무장갑, 물컵, 심지어 걸레까지 넣어둔 소연이의 이야기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함이 드러난다.

이 동화가 아동권리협약의 어떤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야기 "놀이터 옆 콩나물 집"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왜 '콩나물 집'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시작한다. 제일 어린 두 살 성억수부터 제일 큰언니 열일곱 살인 박세화 그리고 장보영 엄마까지 20명이 산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집이 성이 다른 아동들이 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모든 아동은 성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7조).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왈가닥 최나영"

나영은 초등학교 삼학년이지만 힘은 오학년보다 더 세서 웬만한 남자아이도 꼼짝 못한다. 체육 시간에 닭싸움을 한 이야기에서 일상화한 성차별과 신분차별이 나온다. 최나영은 남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정건우와 싸우게 되는데, 건우는 "피, 여자 주제에"라고 말하고, 두 번째 닭싸움에서 진 후에는 "저리 비켜! 이 여자 깡패야"라고 외치며, "엄마, 아빠도 없는 게"라고 편견을 드러낸다. 모든 아동

은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2조).

세 번째 이야기 "노처녀 우리 엄마"

수녀님이 되려고 준비하던 중 버려진 아이를 돌보다가 아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사연을 들려준다. 나영이 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교문앞에 마중나온 엄마가 "집에서 늘 입고 있던 청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뻗친 머리를 빗질도 안 한 모습"이어서 모른 체한, 엄마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아동은 부모를 알고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7조).

네 번째 이야기 "세영이는 도둑년이야"

콩나물 집에서 같이 사는 세영이가 도둑으로 낙인찍힌 사연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애환을 소개한다. 나영은 아직 돈의 개념을 몰랐을 때 문방구에서 가짜돈으로 물건을 산 적이 있었는데, 문방구 주인은 "아항, 여기가 그 유명한 놀이터 옆 콩나물 집이군. 어째 애가 하는 짓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라는 반응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2조).

다섯 번째 이야기 "세영이는 결국 엄마에게 항복을 했다"

도벽이 있는 세영은 들통이 나고 혼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고집을 피우는 세영이를 단식이란 벌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엄마는 "지금 이 버릇 안 고치면 평생 이 버릇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세영이를 설득했고, 이후 세영이는 도벽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능력에 맞게 지도감독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5조).

여섯 번째 이야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아이들을 동정심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진찍기만 좋아하는 국회의원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후원금품을 가져와서 관례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은 사생활의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6조).

일곱 번째 이야기 "엄마, 나를 훔쳐왔지?".

친구가 신고 온 '운동화를 밟은 사건'을 계기로 나영은 낳은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을까에 대해서 회의한다. 나영은 "엄마, 엄마는 나를 우리 엄마 몰래 훔쳐왔지?"라고 묻

지만, 엄마는 "……너를 버린 것은 아니지. 엄마에게 맡긴 것이지……. 언젠가는 너를 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서 나영은 "거짓말, 거짓말이야!"라고 외친다. 이상은 모든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여덟 번째 이야기 "우리 집 막내 성억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사연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억수 아빠가 일찍 죽고 엄마마저 집을 나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늙은데다 병이 들어서 억수를 집안에만 두고 키웠다고 한다. 콩나물 집에 온 막내 억수는 큰언니 세화의 보살핌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지만, 일곱 살이 되면 남자들이 사는 다른 시설로 가야 한다. 이 이야기는 콩나물 집에 온 아이들의 입소와 전원경로를 알려준다. 국가는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아홉 번째 이야기 "저 분이 나를 낳아준 엄마야?"

어느 날 찾아온 나영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한 것을 통해서 낳은 엄마의 일반적인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 나영이는 키워주는 엄마를 닮기 위해서 얼굴에 점을 그려놓지만, 동시에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 그 엄마도 내 엄마가 되겠지' 라는 양가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는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18조).

열 번째 이야기는 "안녕이라는 말은 싫어!"

사회복지시설에 아동을 위탁한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고, 그들의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비판한다. 특히 "세영아, 잘 있거라,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안녕!" 한 이후 아빠는 결코 오지 않았다. 국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열한 번째 이야기 "우리 아빠 성은 '하', 이름은 '나님'"

낳아준 아빠는 있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갔거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여서 공연히 아빠를 생각해서 서글픈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유난히 5월을 슬프게 보내야 하는 아이들의 아픔이 배어 있다. 가정집 아이에게

는 아주 평범한 숙제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써오기' 조차도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시설아동뿐만 아니라, 재혼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도 흔히 겪는 문제이다.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7조).

열두 번째 이야기 "선숙이 머리는 사방으로 뻗쳐있었다."
열세 번째 이야기 "선숙이는 하이에나 같았다."

학대받은 경험이 많은 선숙이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준다. 선숙은 학교에서조차 다루기 힘들어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조금 먼 다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다른 식구들과도 늘 다툼이 일어나 '생각방' 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선숙이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19조).

열네 번째 이야기 "고무장갑은 어디로 갔을까?"

공동생활 속에서 자기 옷이나 물건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이름이 적힌 옷장이 생긴 후의 에피소드이다. 공동생활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소연이가 자신

의 옷장에 물컵, 고무장갑, 심지어 걸레까지 몰래 넣어두었다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의 곤궁한 형편을 잘 보여준다.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열다섯 번째 이야기 "세영이의 생일날"

열 번째 생일에 찾아오기로 한 아버지가 결국 찾아오지 않은 사연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의 그리움이 나타난다. 그 빈 가슴을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국가는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하여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0조).

열여섯 번째 이야기 "엄마의 엄마는 깡패였을까?"

놀이터에 놀러간 억수가 한 아이한테 맞았고, 이를 본 나영이가 그 아이를 혼냈으며, 마침내 어른싸움으로 번진 사건을 다룬다. 화가 난 이웃 아줌마가 "사방팔방에서 콩가루 집안 아이들만 모아서 데려다 키우니 깡패만 나오지. 왼통 문제아들만 모인 집에서 크니 깡패 같은 아이만 나오지. 안 그래?" 하고 소리쳤는데, 아줌마의 말에서 콩나물 집

은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변한다.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일 것이다. 국가는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하여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0조).

열일곱 번째 이야기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아동학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을 대응하는 일을 소재로 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학대한다고. 확인하러 왔습니다."하고 찾아온 경찰은 이곳 사정을 이해하고 후에는 도움을 주려고 가끔 찾아온다. 이 사례는 국가와 담당공무원이 아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0조).

열여덟 번째 이야기 "나는 자원봉사자가 될 거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힘으로 운영되는 콩나물집을 소개한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수칙도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 노래하는 수녀님, 나영이가 좋아하는 컴퓨터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목사님 등이 모두 자원봉사자로 아이의 양육을 돕는다. 그래서 나영이

의 꿈은 '닭싸움 기능보유자' 로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아동권리협약 제31조).

열아홉 번째 이야기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엄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영이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비슷한 아줌마를 만난다. 콩나물 집 엄마를 떠올리며 친엄마를 따라갈까 고민하는 나영이의 갈등이 그려지지만, 결국 나영이의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다. 나영이가 밝은 성격으로 콩나물 집에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는 부모와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국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 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4 인권보호의 사회적 책임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예방, 보호, 치료를 위하여 2000년에 전국의 시/도에 1개소씩 설립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나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정서적 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성적 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나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이나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운영(1391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 아동학대 행위자나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이다.

긴급전화 설치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1391)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설치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나 아동학대예방 전문 기관설치,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의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나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대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는, 그 유형에 따라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이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처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전화 1391로 접수한 상담은 총 581건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08건이었다. 508건 중에서 105건은 현장조사, 403건은 현장조사 없이 개입하였다. 508건 중에서 467건은 혐의가 있었고, 나머지 41건은 없었다.

아동학대사례 467건을 분석하면 피해자의 성별은 남자 234명이고 여자 233명으로 성별 차이는 없었다.

유형은 신체적 학대 37명, 정서적 학대 17명, 성적 학대 3명, 방임 302명, 유기 108명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내가 284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1명, 친척집 6명, 이웃집 3명, 기타 173명이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는 시설입소 233명, 타기관의뢰 9명, 원가정보호 117명, 친인척보호 3명, 일시보호 103명, 가정위탁 2명이었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는 유기된 아동까지 담당하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유기된 아동을 취급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의 모든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처리할 때 '일시보호시설' 이 꼭 필요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일시보호시설이 별로 없다.

둘째,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대부분 친부모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가 많아서 중장기간 보호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예, 유사자폐증, 언어장애, 도벽, 허언 등)을 치료해야 하므로 치료형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도 가정폭력의 하나이지만 법적용을 할 때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을 적용하고,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아내학대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버림받은 아동을 위한 대안가정

버림받는 아동을 보호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주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2001년 현재 273개소이고 18,808명이 살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238개소로 17,437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직업훈련시설 5개소(179명), 보호치료시설 6개소(367명), 자립지원시설 13개소(252명), 일시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2개소(193명), 아동전용시설 1개소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대규모 보호양식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시설을 점차 줄이고 '공동생활가정' 을 늘려갈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도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사업을 하여 주택 임차료로 세대당 87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분원의 형태로 공동생활가정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켜서 요보호아동의 양육방식을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은 가정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주는 방식은 입양이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가정위탁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어린 영아는 입양을 장려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은 가정위탁보호를 장려하고 있다.

2001년말 현재까지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209,381명이다. 그중 국내입양은 61,247명(30%)이고 나머지는 국외입양으로 148,134명(70%)이다. 국외입양이 더 많은 이유는 6 · 25전쟁으로 늘어난 혼혈아를 미국 등에 입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고, 혼혈아가 줄어들자 고아 등을 외국에 입양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외국에 입양된 아동

중에서 미국에 입양된 아동이 전체의 2/3가량인 66.0%라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입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1년의 경우 국내입양이 1,770명이고 국외입양이 2,436명으로 국내입양이 전체의 42.1%를 차지한다. 국내입양이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국외입양이 더 많은 이유는 다음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입양기관이 아동을 국내에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수수료를 1인당 210만원 가량 받는데, 외국에 보낼 경우에는 그 2~3배 가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애가 있는 아동은 국내에 입양되기 어렵다. 2001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입양된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은 전체의 0.8%(14명)뿐이지만, 국외입양된 아동 중에서 장애아동은 30.5%(743명)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정부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까지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입양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이들은 입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입양아동에게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의 제공, 입양부모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 등을 확대하면 국내입양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소년소녀가장세대였던 아동의 상당수는 위탁가정의 아동으로 바뀌어 보호받고 있다. 2001년 현재 위탁가정의 아동은 3,246세대 4,425명이다.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아동 중 78%는 과거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한테 보호를 받고, 일부는 친인척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 위탁보호를 받는다. 소년소녀가장제도보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상황이 한층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위탁가정은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89.4%이고, 이들의 상당수가 연령은 60세 이상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상황이다. 아동과 친인척이라 정의적인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에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지지와 격려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가출청소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쉼터가 서울과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를 포함할 때 모두 23개소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여 일시 보호하고, 개별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한 상담, 학습지도와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하며, 대인관계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등을 실시하고, 취미와 기능교육, 자원봉사활동, 사후관리 등을 하기도 한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중고등학생의 약 10%가 가출한 경험이 있는데 쉼터의 수가 너무 적고, 기존 청소년쉼터의 대부분이 소녀를 위한 곳이어서 남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다.

또한,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데, 쉼터의 사업은 귀가와 일시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장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중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

동생활가정이 필요하고, 성매수 경험이 있거나 임신한 청소년은 치료형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으며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어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인권교육의 강화와 법령의 정비

한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어서 이 협약을 성실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정부에게 열네 가지를 '제안하고 권고' 하였다.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강화, 아동인권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체계화하고 전문가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아동에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 · 경찰관 · 법률가 · 사회복지사처럼 아동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아동인권전담기구는 아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 정리하고 자료를 발간하며, 아동인권 교육자료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

는 영향력 있는 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반 법령의 개정과 폐지는 남녀유별과 장유유서 등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성차별과 연령차별적인 제반 법령이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꼭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당사국의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에게 무차별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재혼 가족내에서 아동의 '성'은 갈등과 불편을 초래한다. 성차별 연령차별적인 민법의 각종 조항을 아동권리협약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그중 여성계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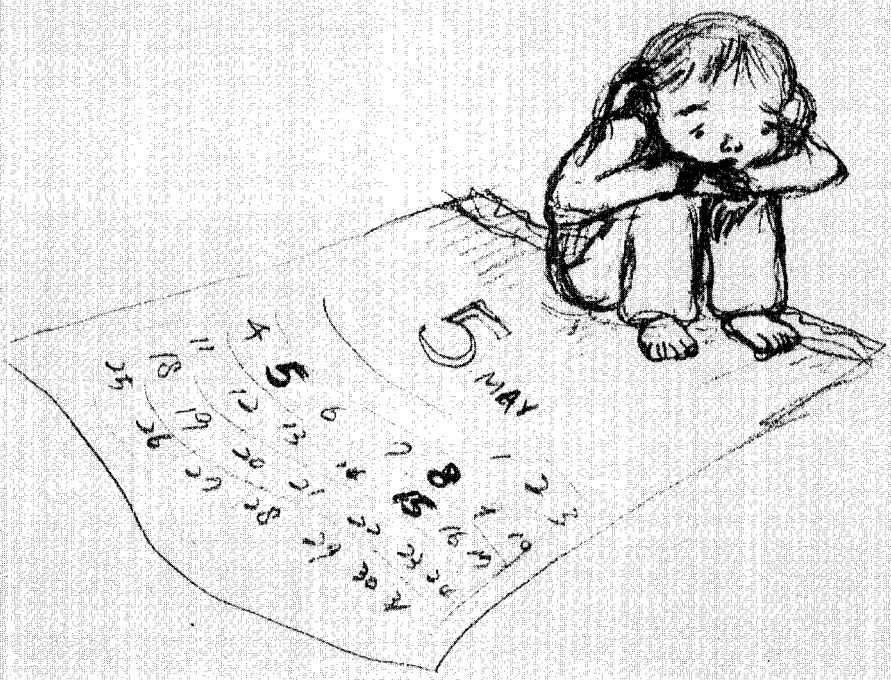

가정에서 실천하기

가정은 아동의 일차적인 안식처이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남녀유별과 장유유서 등 미풍양속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가정은 보다 진보적으로 아동 권리를 옹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동권 캠페인: 평화가족 만들기'를 실천하고 그 지침서를 개발하고, '평화가족 수칙 10가지'를 공표한 바 있다.

평화가족 수칙 10가지

- 평화를 가족공동체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
- 가족회의를 통해서 살림살이와 생활방식을 의논한다.
- 어떤 경우에도 폭언과 체벌을 하지 않는다.
- 가족의 공동의 기록물을 소중히 여긴다.
- 부부, 부모자녀가 가사를 분담한다.
- 가족이 함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 재산의 형성이나 관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 가족이 각자의 자아를 존중하고 실현하도록 돕는다.
- 가족간 갈등은 대화로 해결한다.
- 친척과 이웃의 어려운 일을 적극 돕는다.

'평화가족 만들기' 는 성차별이 없는 평등가족을 넘어서 아동과 어른간의 연령차별이 없는 가족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과 함께 가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상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점에서 볼 때 반성할 점이 많다. 예컨대, 자녀의 학원 선택, 대학의 학과 선택, 이사를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천하기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그 내용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을 강조하는데,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권리 및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학교내에서의 학생들간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에 예시된 질문은 교사가 학생들과 토론할 거리가 될 것이다.

집단괴롭힘과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거리

- 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폭력을 사용하는가?
- 집단 괴롭힘과 패싸움과는 어떻게 다른가?
-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을 교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선도와 처벌대책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있는가?
-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권고전학 혹은 자퇴시키는 것이 교육적인 방법인가?
-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대중매체로부터 폭력을 학습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체벌, 용의검사, 소지품검사, 성적공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당국과 교사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이 '교육적인 이유' 로 일어나기 쉬워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도규정 등은 개폐되어야 한다.

학교내에 학생 옴부즈맨 등을 두어서 학교당국이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적극 모니터하고 옹호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교내에서 학생의 참여권을 향상시키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의 대표로 구성되는데 학습의 주체인 학생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도 부합한다.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유해환경 등을 적극 규제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해환경은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성매매업소, 아동에게 성적 자극을 주는 음란물과 공격성을 충동질하는 대중매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황폐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약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단위에 유해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유해한 물품, 시설, 매체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절도, 폭력, 성문제 등에 노출되기 쉬워서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선도하거나 방지하는 활동도 인권옹호 활동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경우 법률지식이 낮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고,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는 청소년상담사업이나 인권상담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군청소년상담실과 협력하여 부설기관으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광주YMCA도 광주광역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옹호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그리고 휴일근무가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용차별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권옹호 사업이다.

대중매체가 실천하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음란물과 폭력물의 무분별한 방영을 자제하고, 아동 관련 사건의 선정적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이거나 가해용의자인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대중매체는 아동의 인권 침해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관련 사안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성적인 학대 등을 은폐하기 쉬운데 대중매체가 심층보도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그 속성상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발전권, 정보접근권, 참여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직접 만든 매체물을 대중매체에서 방영할 수도 있고, 아동이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대중매체를 자신의 생활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실천하기

아동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할 수 있지만, 아동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넓혀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우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사례를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고, 인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 아동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간의 정보교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국내외 단체와 협력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함께 이야기해 봐요

인권동화를 읽고 느낌을 나누어 보기

인권동화 『엄마 엄마』를 읽고, 특정 부문의 이야기가 아동의 어떤 권리를 주로 이야기하는지를 구성원끼리 느낌을 나누어 본다.

- 인권동화 '엄마 엄마' 의 특정 부문을 함께 읽는다.
- 읽은 다음에 각자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다른 사람의 느낌에 공감을 나타내거나 의견을 나눈다.
- 『엄마 엄마』의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나눈다.
-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눈다.

지도자 유의사항

- 책을 읽고 그 느낌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춘다.
- 각자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말하되, 논쟁은 피한다.

아동인권의 실태와 보호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이 처한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보호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국제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한다(예, 체벌받는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 과도한 학습 압력을 받는 아동 등)
- 각자 구상한 그림을 OHP용지에 칼라펜으로 그린다.
- 완성한 그림을 OHP프로젝트에 올려서 스크린으로 보며 그림을 설명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 평범한 아동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 OHP용지에 잘 그려서 여러 작품을 하나의 주제가 있는 영상물로 발전시킨다.

아동이 겪은 인권 침해사례와 대처방안 사례연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심층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연구한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은 아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관련 전문가의 초대, 강의와 토론을 준비한다.

-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아동인권 침해사례에 대하여 집중 연구한다.
- 관련 전문가에게 사례별 특강을 듣는다.
- 해당 사례의 개입과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 아동이 겪은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예시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다.
-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쉬운 말로 풀어보기

아동권리협약을 아동의 연령과 지적 능력에 맞게 쉬운 말로 풀어쓰기를 하여 생활 속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 아동권리협약의 전문, 백지, 펜, 국어사전
- 구성원의 모둠 수에 맞게 몇 개의 조항씩 쪼갠다.
- 핵심조항을 함께 읽고 아동의 연령과 지적 능력에 맞는 쉬운 말로 풀어쓰는 시범을 보인다.
- 각 조항을 쉬운 말로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 서로 의견을 주어서 보다 알기 쉽게 수정 보완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읽고 이해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아동의 지적 수준에 맞게 고친다.
- 전문과 54개 조항에서 아동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조항, 국가나 어른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작성하여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한다 (예, 평화가족 수칙).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찾아보기

아동의 권리 옹호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이들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인터넷으로 아동인권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검색,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살펴본다.
-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자신의 의견을 남긴다.
- 자신이 주로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 인권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지도자 유의사항

- 참고자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기관을 찾아본다.
- 특정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기관을 보다 폭넓게 찾아본다.

가상공간에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공동체 만들기

- 가상공간에 아동인권을 위한 공동체(카페 등)를 만든다.
- http://cafe.daum.net/childrights로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자료실에서 정보를 나눈다.
- 가상공간 운영진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홍보한다.
-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스팸메일을 보내는 포르노사이트 고발운동 등을 시범사업으로 펼친다.

지도자 유의사항

- 가상공간에서 아동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 운영자는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의 방향성을 형성한다.
- 새로운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상공간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참고하세요

아동인권과 깊이 관련된 정부 기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http://www.child.seoul.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비정부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www.minbyun.jinbo.net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welfare.pspd.org

청소년폭력예방재단 http://www.jikim.net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lfare.net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http://www.ilovechild.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이웃사랑회 http://www.yes4good.org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youthnet.re.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ww.koreayouth.net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http://www.jikimi.or.kr

아동인권에 관한 책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 2002.

김형식 여지영 역,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복지, 2001.

김혜숙 외,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박상률, 조영래, 『인권변호사』, 사계절, 1996.

박영란 외,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2001.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변용찬 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 제도적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부, 『2001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권리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199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199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활동지침」, 199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illegibl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시아의 인권교육: 호주, 인도, 홍콩 편」, 사람생각, 1999.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게임으로 알아보는 아동의 권리협약」, 1995.

이대근 외,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7.

이용교 외, 「청소년인권 보고서」, 인간과복지, 1997.

이용교 · 이희길 역, 「인권교육의 기법」, 인간과복지, 1997.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199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역,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사람생각, 2000.

상수하늘소, 「별보다 생명보다 귀한 사람: 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우렁차고 힘찬 인권 이야기」, 아이세움, 2002.

하승수 · 김진,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1999.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무엇이 달라졌는가」, 2001.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 1, 2」, 한길사, 2000.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1999.

한상범, 「인권수첩」, 일암사, 1999.

"엄마, '안녕' 대신 '갔다올게' 라고 말해, 응?"

노처녀 원장 엄마와 사는 송나물 집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부대끼는 세상
한가득 그리움이고 기다림뿐인
부연 하늘 아래 그래도 서로 기대 안고
부추기며 내딛는 어린 삶의 여정.
끝내 어른 뺨에도 진한 감동자국을 남기는
우리 시대 현장 동화.

나영이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나영이가 아니라, 세영이에게 편지를 하고 싶다고요? 송나물 집에 사는 누구라도 좋아요. 송나물 집 엄마도 좋고, 자원 봉사하러 오는 선생님도 좋고, 혹시 동화책 주인공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아요.

2003년 8월 9일(토)까지 보내 주세요.
2003년 8월 20일(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담당관실
전자우편 | edu2001@humanrights.go.kr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